

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제 6 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

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회사")의 제 6 기 정기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1. 일시: 2023 년 3 월 28 일(화) 오전 10 시
2. 장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(전경련회관)
3 층 '데이지' 회의실
3. 출석현황
발행주식총수: 28,358,617 주(의결권 있는 주주 28,358,617 주)
총 주주수: 5,373 명
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: 11,458,823 주
출석주주수: 65 명

의장인 대표이사 박영희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본 회의가 정관에서 정한 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,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

보고사항 1: 영업보고

의장은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6 기 영업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보고사항 2: 감사보고

의장은 감사로 하여금 6 기 감사보고를 설명하게 한 후, 동 보고를 마치다.

보고사항을 모두 마친 뒤 부의의안 심의에 들어가다.

제 1 호 의안: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현금배당을 위하여 상법 제 461 조의 2 에 의거 자본준비금 감액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2 호 의안: 제 6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제 6 기(2022.07.01~2022.12.31) 재무제표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3 호 의안: 제 6 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3,771,696,061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4 호 의안: 제 7 기 및 제 8 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당 회사의 제 7 기 및 제 8 기 사업계획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5 호 의안: 차입 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당 회사의 차입계획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6 호 의안: 사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당 회사의 사채 발행 계획을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7 호 의안: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별첨의 정관 개정안과 같이 당 회사의 정관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

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8 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
8-1 호: 박영희 후보

8-2 호: 김연희 후보

8-3 호: 정현섭 후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당 회사의 이사임기가 만료인 바, 아래와 같이 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함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 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구분	성명	생년월일
사내이사	박영희	1975.01.03
기타비상무이사	김연희	1980.12.18
기타비상무이사	정현섭	1980.11.06

제 9 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

9-1 호: 이익재 후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배부한 회의자료를 통해 당 회사의 감사임기가 만료인 바, 아래와 같이 신규 감사를 선임하고자 함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출석한 주주 의결권(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법 제 409 조의 2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는 제외함)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구분	성명	생년월일
감사	이익재	1981.06.24

제 10 호 의안: 제 7 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당 회사의 제 7 기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(1 인당 150 만원), 이사(1 인당 90 만원)으로 하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제 11 호 의안: 제 7 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

의장은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당 회사의 제 7 기 감사 보수를 90 만원으로 하는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 후, 출석주주의 심의를 구한 바, 서면의결 포함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다.

의장은 이상으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.
(총회 종료시간: 오전 10 시 30 분)

위 주주총회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 날인하다.

2023 년 3 월 28 일

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겸 대표이사 박 영 희



<별첨. 정관 개정안>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14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	<u>제14조(동등 배당)</u> <u>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</u>	관련 법령 (상법 제350조 제3항의 삭제) 개정에 따른 적용
<신설>	<u>제46조의2 (전환사채의 발행)</u> ① <u>회사는 본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4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u> 1. <u>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 2. <u>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·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 ② <u>본 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라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</u> ③ <u>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</u>	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

	가 정한다. ④ <u>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단,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 사회의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u> ⑤ <u>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하며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	
<신설>	제46조의3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<u>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40,000,00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u> 1. <u>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</u> 2. <u>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</u> · <u>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</u>	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조항 신설

	<u>경우</u> ② <u>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.</u> ③ <u>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u> ④ <u>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단, 제 1항 제1호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u> ⑤ <u>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	
제46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	제46조의4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	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(46조의2 → 46조의4)
제46조의3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)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	제46조의5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)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	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(46조의3 → 46조의5)

<신설>	제58조 (주주 보호에 관한 사항) ① <u>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자산을 투자·운용하여야 한다.</u> ② <u>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u>	주주 보호 조항 신설
<신설>	제59조 (주주 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등) ① <u>회사의 임원은 자산의 투자·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1. <u>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</u> 2. <u>자산의 투자·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/u> 3. <u>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행위</u> ② <u>회사의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u>	투자자 보호를 위한 임원의 행위준칙 조항 신설
제58조 (법규 적용 등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상법」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.	제60조 (법규 적용 등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투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상법」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.	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(58조 → 60조)

제59조 (발기인의 성명, 주소) 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.	제61조 (발기인의 성명, 주소) 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 기재와 같다. <u>발기인: [성명] 박 영 희</u> <u>[주민등록번호] 750103-*****</u> <u>[인수주식수] 보통주식 100,000주</u> <u>발기인: [성명] 정 현 섭</u> <u>[주민등록번호] 801106-*****</u> <u>[인수 주식수] 보통주식 200,000주</u>	신설 조항으로 인한 조항 숫자 변경 (59조 → 61조) 및 발기인 정보 기재
<신설>	부칙(2023.03.[*].) 제1조(시행일) <u>이 정관은 2023년 3월 [*]일(단, 정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가 필요한 조항에 한하여 2023년 3월 [*]일 또는 해당 변경인가를 득한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)로부터 시행한다.</u>	정관 개정 시행일에 대한 내용